



제427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안전조정위원회 최소심사기한 규정〉

- 박형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949호)
- 구자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748호)

2025. 7.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안)	1
II.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안)	2
III. 검토의견	3
※ 참고자료	7

I.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안)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형수 · 엄태영 · 조정훈 · 임이자 · 김도읍 · 김대식
서지영 · 권영진 · 김성원 · 구자근 · 윤영석 의원(11인)

나. 발 의 일 : 2025. 2. 6.

다. 회 부 일 : 2025. 2. 7.

※ 의안번호 : 7949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안전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그 구성일부터 90일로 하고,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한 경우 9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음.

그런데 안전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협의나 조정 없이 안전조정위원회가 구성된 후 며칠 만에 조정안이 의결되는 경우가 있어,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이견 있는 안전이 심의·조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안전조정위원회의 기능이 무력화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전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한 경우 외에는 그 구성일부터 60일이 지나기 전에 의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안전조정위원회가 무력화되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7항 신설).

II.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안)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구자근 · 인요한 · 최수진 · 김선교 · 신동욱 · 권영세
배준영 · 박준태 · 최은석 · 박덕흠 · 박형수 · 강명구
박성민 · 김성원 의원(14인)

나. 발 의 일 : 2025. 3. 10.

다. 회 부 일 : 2025. 3. 11.

※ 의안번호 : 8748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는 법안 심사과정에서 사회적 갈등과 여야간의 첨예한 이견으로 인해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안건조정위원회는 구성일로부터 90일 이내 활동을 통해 법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와 여야간의 논의를 통해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어 안건조정위원회가 마련되더라도 곧바로 법안이 처리되어 버리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30일 이상 심의를 위한 최소 경과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안 제57조의2제6항).

Ⅲ. 검토의견

양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안전조정위원회의 최소 심의기간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박형수의원안은 안전조정위원회 구성일부터 60일, 구자근의원안은 30일 이상이 경과한 후에 조정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박형수의원안	구자근의원안
제57조의2(안전조정위원회) ① ~ ⑤ (생략) ⑥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부된 안전에 대한 <u>조정안을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이 경우 조정위원장은 의결된 조정안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57조의2(안전조정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57조의2(안전조정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u>조정안에 대해 30일 이상이 경과한 다음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 ----- -----.
<신설>	⑦ <u>조정위원회는 그 구성일부터 60일이 지나기 전에는 의결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⑦ ~ ⑩ (생략)	⑧ ~ ⑪ (현행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와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조정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안전조정위원회가 구성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안전조정제도는 여야 간의 이견조정이 필요한 쟁점 안전에 대한 여·야 간 숙의와 토론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른바 ‘국회선진화법’(2012. 5. 시행)을 통해 도입되었음.

현행법 제57조의2에 따르면, 안전조정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하기 힘든 안전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되며, 조정위원 총 6인 중 3인은 제1교섭단체 소속 위원으로, 나머지 3인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위원으로 함.

안전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구성일로부터 90일이고,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한 경우에는 9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단축할 수 있음. 조정안은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표-2] 안전조정위원회 개요

구 분	주요내용
구성목적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전을 심사 *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

구 분	주요내용
구성절차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
활동기한	구성일로부터 90일 *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여 9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위원구성	위원장 포함 6인 - 제1교섭단체 소속 위원: 3인 - 제1교섭단체 소속 위원 이외의 위원: 3인
조정안 의결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4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회 표결	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안건을 표결

제20대국회 이후 2025년 6월말 현재까지 실제 안전심사가 이루어진 안전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총 44건 중 최초 회의 일 혹은 그 다음 날에 조정안을 의결한 경우가 33건(75%)에 달하여 대다수의 안전조정위원회가 단기간에 활동을 종료한 것으로 나타남(참고자료 참조).

그러나, 이처럼 안전조정위원회의 구성 직후에 조정안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소수 정당의 의견개진 기회 보장, 현안·이전에 대한 숙의 등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당초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음¹⁾.

이에 양 개정안은 안전조정위원회가 그 구성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안을 의결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조

1)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법상 안전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그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의 상한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안전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이 만료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안전조정위원회가 안전에 대한 조정 심사를 마치면 조정안을 의결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안전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조정안의 가결을 선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국회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음(2020. 5. 27. 선고 2019헌라5).

정안에 대한 최소한의 심의기간을 보장하고 쟁점·이견이 있는 안전에 대한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최소 심사기간(박형수의원안 60일, 구자근의원안 30일)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조정안의 의결이 제한되므로 시급한 안전의 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점, 최소 심의기간의 설정이 실질적인 숙의와 토론으로 반드시 귀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²⁾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³⁾.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안전조정위원회의 최소 활동기한을 명시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318호)⁴⁾」이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표-3] 유사취지 법률안의 최소심의기간 규정 현황

김예지의원안	박형수의원안	구자근의원안
30일 이상 90일 이내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한 경우는 제외	60일 이상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한 경우는 제외	30일 이상

문 의 처

02) 6788-5015

2) 이구형, 「국회 안전조정위원회의 운영 현황과 쟁점」, 『이슈와 논점』 제2029호, 국회입법조사처, 2022.

3) 양 개정안과 같이 안전조정위원회의 최소 심의기간을 신설하려는 경우에는 박형수의원안 부칙 제2조와 같이 적용례를 두어 개정내용의 적용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4) 안전조정위원회의 최소활동기간을 30일 이상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다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라도 조정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참고 제20대국회 이후 안전조정위원회 운영 현황 (2025년 6월말 기준)

연 번	대수	소관 상임위	안전	안전조정위 구성요구일	최초 회의일	조정안 의결일
1	20대	교문위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 등	2016.11.25	2017. 1.16	2017. 1.17
2	20대	교육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19. 6. 26	2019. 7. 8	- *안전미의결 상태에서 활동기한 도래로 종료
3	20대	교육위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2019. 9.24	2019.10.30	- *안전미의결 상태에서 활동기한 도래로 종료
4	20대	행안위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2019. 6.26	2019. 9. 6	2019. 9.23
5	20대	정개특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 8. 26	2019. 8. 27	2019. 8.28
6	21대	법사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12. 7	2020.12. 8	2020.12. 8
7	21대	법사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12. 7	2020.12. 8	2020.12. 8
8	21대	법사위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21. 4.26	2021. 4.26	2021. 4.26
9	21대	정무위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12. 7	2020.12. 8	2020.12. 8
10	21대	정무위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	2020.12. 7	2020.12. 8	2020.12. 8
11	21대	정무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12. 7	2020.12. 8	2020.12. 8
12	21대	정무위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2023.12.14	2023.12.14	2023.12.14
13	21대	기재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등	2021.12. 8	2021.12.31	2022. 1. 4 *일부안전만 의결

연 번	대 수	소 관 상 임 위	안 건	안 건 조 정 위 구 성 요 구 일	최 초 회 의 일	조 정 안 의 결 일
14	21대	교육위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21. 2.19	2021. 3. 4	2021. 5.13
15	21대	교육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 8.19	2021. 8.19	2021. 8.19
16	21대	교육위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 8.19	2021. 8.19	2021. 8.19
17	21대	교육위	기초학력보장법안	2021. 8.19	2021. 8.19	2021. 8.19
18	21대	교육위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	2021. 8.19	2021. 8.19	2021. 8.19
19	21대	교육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 8.19	2021. 8.19	2021. 8.19
20	21대	교육위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 8.19	2021. 8.19	2021. 8.19
21	21대	교육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 8.19	2021. 8.19	2021. 8.19
22	21대	교육위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등	2023. 3.20	2023. 3.20	2023. 3.20
23	21대	교육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 2.27	2023. 4.17	2023. 4.17
24	21대	과방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 6.24	2021. 6.28	2021. 7.20
25	21대	과방위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2022.12. 1	2022.12. 1	2021.12. 1
26	21대	과방위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7.26	2023. 9. 5	- *안전미의결 상태에서 활동기한 도래로 종료
27	21대	행안위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2023.8.17	2023.8.23	2023.8.30

연 번	대 수	소 관 상임 위	안 건	안건조정위 구성요구일	최 초 회 의 일	조 정 안 의 결 일
28	21대	문체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12.16	2020.12.17	2020.12.17
29	21대	문체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1. 8.17	2021. 8.18	2021. 8.18
30	21대	농해수위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 9.26	2022. 9.29	2022.10.12
31	21대	농해수위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등	2023.12.28	2024. 1. 9	2024. 1.15
32	21대	산자중기 위	한국광업공단법안	2021. 2.23	2021. 2.23	2021. 2.23
33	21대	환노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20.12. 8	2020.12. 8	2020.12. 8
34	21대	환노위	기후위기대응법안 등	2021. 8.18	2021. 8.18	2021. 8.18
35	21대	환노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 등	2023. 2.15	2023. 2.17	2023. 2.17
36	21대	국토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12.26	2023.12.27	2023.12.27
37	21대	정보위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	2021. 3.15	2021. 6. 7	— * 조정대상안건이 조정위 의결없이 전체회의에서 의결
38	22대	과방위	한국방송공사 박민 사장 제415호 국회 임시회 제5차회의 불출석에 대한 고발의 건	2024. 6.25	2024. 6.25	2024. 6.25
39	22대	환노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25	2024. 7.18	2024. 7.18

연 번	대 수	소 관 상임 위	안 건	안건조정위 구성요구일	최 초 회의 일	조 정 안 의 결 일
40	22대	법 사 위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2024. 9.11	2024. 9.11	2024. 9.11
41	22대	교 육 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1. 5	2024.11. 6	2024.11. 6
42	22대	법 사 위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4.11. 8	2024.11. 8	2024.11. 8
43	22대	농 해 수 위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24.11.21	2024.11.21	2024.11.21
44	22대	교 육 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1.27	2024.11.27	2024.11.27

* 주1: 안전조정위원회 구성요구서가 제출되어 실제 안전조정위원회 회의가 개최된 사례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안전조정위원회 구성요구서가 제출되었으나 위원선임 없이 90일이 경과한 경우, 안전조정위원회 구성요구서가 제출되었으나 별도의 위원선임 없이 기존에 구성된 안전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한 경우는 제외함

* 주2: 안전조정위 구성일은 안전조정위 구성 요구일을 기준으로 함

* 주3: 조정안 의결일은 안전조정위에서 조정안이 의결된 날을 의미함

* 주4: 붉은색 음영 - 최초 회의일 당일에 조정안을 의결한 경우
하늘색 음영 - 최초 회의일 다음 날에 조정안을 의결한 경우

자료: 국회사무처